
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석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7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0. 2.

발의자 : 강석진 · 이명수 · 이언주
박맹우 · 김무성 · 김재원
송석준 · 박덕흠 · 황주홍
윤재옥 · 신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·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고,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등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우수사업자 인증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	<p>제16조(우수사업자 인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다만,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~ ⑧ (현행과 같음)</p>